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43

2024. 9. 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 징수) 자치구 위임

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대중골프장 병설에 대한 사무 삭제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III.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의 자치구 위임

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

- 지난 2022년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되고,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가 도입됨.
- 야생생물법의 개정 내용¹⁾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 처럼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야생동물의 전시가 가능함.
 -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이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같은 법 제8조의4)²⁾.

1) 야생생물법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69조(벌칙)제1항제1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은 2023. 12. 14.부터 시행됨(법률 제19088호 부칙 제1조 단서).

- 또한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는 야생동물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되어 2025. 12. 14 시행 예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생산·판매·위탁관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같은 법 제22조의5)³⁾.
- 아울러 기존의 야생동물 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전시자가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 규정의 시행일 전(2023. 12. 13.)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대해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⁴⁾이 신설됨.
- 기존 전시자[야생동물법 공표(22.12.13) 당시 전시자는 2023. 12. 13.까지 관련 현황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 12. 13.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2024년 7월 기준 신고현황: 12개 자치구 23개 시설 신고

< 법 개정 전후 야생동물 시설 유형별 변화 >

종전 사각지대	관리제도 신설		지자체 사무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	야생동물 전시시설	전시금지 (기존 시설은 신고 시 '27.12.13.까지 유예)	전시 신고
야생동물 판매, 수입, 생산시설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 전시 가능 ('25.12.14.부터)	영업 허가	자치구

자료: 푸른도시여가국(現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내부자료

- 2) 업무 위탁 규정(야생동물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생태원 내에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 3)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하 종략)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 4) 법률 제19088호 야생동물법 부칙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유형별 전시시설 신고현황 >

(’24. 7월 기준, 단위: 개소)

자치구	계	전시시설*	판매시설**
계	23	7	16
종로구	5	1	4
광진구	1	1	-
은평구	2	1	1
마포구	3	3	-
강서구	1	1	-
구로구	3	-	3
영등포구	1	-	1
관악구	2	-	2
서초구	1	-	1
강남구	1	-	1
송파구	1	-	1
강동구	2	-	2

* 전시시설 : 시장에게 신고한 시설에 한하여 ’27.12.13.까지 전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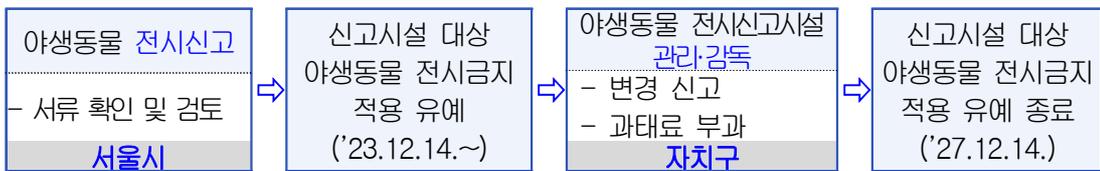
** 판매시설 : 현재 허가없이 판매시설 운영가능하나 전시행위를 위해서는 시장에게 신고 필요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25. 12. 14.) 이후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전시 지속 가능

나. 개정 내용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 위임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수리’ 사무와 전시행위 유예기간 동안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⁵⁾를 구청장이 관리토록 하는 것임.

< 개정 내용에 따른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관련 업무 절차 >



-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신고 처리 사무는 서울시에서 이미 수행(2023. 12. 13.)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변경신고 수리 사무의 위임에 대해서만 규정함.

5)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주관부처	사무명	근거법령	수익	주관부처	사무명	근거법령	수익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자연 생태과	4. 동물원수족관 이 아닌 야생 동물 전시 신 고 시설의 관 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088호) 부칙 제3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088호) 부칙 제3조제2항	구청장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가 2025. 12.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 행위는 주로 구청장의 영업허가에 의해 야생동물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효율적인 업체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처리 주체를 미리 일원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특히 2024년 7월 기준으로 신고된 전시시설 유형 중 판매시설 비중이 70%(16개소)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야생동물 전시가 판매시설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판매시설은 허가제 시행 이후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원 편의 및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사무는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의 관리·감독(변경신고·과태료 부과)에 관한 민원사무로서 조례상의 위임기준도 충족하므로⁶⁾ 동 사무를 위임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 다만 동 사무의 위임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에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므로 서울시는 위임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의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⁷⁾.

3.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의 환수

가.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무 개요 및 환수 배경

-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개설 허가권자가 구분되어 있음.

< 의원급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제33조(개설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병원, 병원급 ⇒ 시·도지사 허가 >

제33조(개설 등)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개설 및 변경허가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고, 이는 198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⁸⁾.

7)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서울특별시조례 제2523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89. 11. 16. 공포).

< 현행 조례상 의료기관 관리권한 구분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구청장

- 그러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 개설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운영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한 의료기관의 분포⁹⁾, 비효율적인 병상 운영,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전담병상 신속 확보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감염병·재난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의 의료기관 관리 권한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병상관리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개설허가 권한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¹⁰⁾에서도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경우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할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나. 개정 내용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권한을 환수하되, 서울시와 자치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는 구청장으로서의 위임을 유지하였음.

9) '24. 8. 12. 기준 서울시의 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강남구 66개소, 송파구 42개소, 용산구 2개소, 중구·성동구 각 10개소, 동작구·종로구 각 11개소 등이며, 병상수는 강남구 6,878개, 송파구 6,324개, 용산구 775개, 중구 788개, 마포구 856개 등으로 지역 간 편차와 병상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10)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보건복지부-7436, 2023. 8. 14.).

현행				개정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가. <u>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 양병원 또는 정 신병원(이하 "병 원 등"이라 함)</u> 의 개설 허가 나. <u>병원 등</u> 의 변경 허가	○ 「의료 법」 제33 조제4항 ○ 「의료 법」 제33 조제5항	구청장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가. <u>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 병원 등"이라 함)</u> 의 개설 허가 나. <u>종합병원· 병원</u> 등의 변경 허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청장

-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백일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는바, 그동안 자치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따른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 중앙정부 기본시책의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무의 환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동 사무의 환수와 관련한 자치구의 의견조회 결과 개설허가 권한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권한 또한 함께 환수토록 요청하는 의견¹¹⁾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종합병원 개설허가와 변경허가 관련 사무처리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변경허가 권한의 환수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와 위임 근거 법령 등 정비

가.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11) 25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강남·중랑)는 종합병원 변경 허가권한도 함께 환수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함. 그 외 23개 자치구는 동의 의견임(동의 14, 의견없음 9).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관리 관련 사무’ (문화예술과)와 ‘대중골프장 병설 사무’ (체육정책과)를 정비하고 있음.
- 먼저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 관련 사무는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신고·폐업 등의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¹²⁾이 시행되면서 사무위임의 필요성이 없어짐.
- 또한 대중골프장 병설 사무¹³⁾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를 구청장에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최근 대중골프장 수의 증가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삭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¹⁴⁾이 시행된 만큼 조례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
- 이와 같이 두 사무 모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시민의 혼선 방지와 체계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사무를 정비한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임.
- 다만 서울시가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지 않으므로써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방치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입법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12) 법률 14431호, 개정 2016. 12. 20., 시행 2017. 6. 21.(개정 이전의 법률에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13) 법률 제19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용
제14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並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비회원제 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14) 법률 제19252호, 개정 2023. 3. 21., 시행 2023. 4. 22.

나. 위임 근거 법령 및 사무명 등 정비

- 동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무명, 자구 및 오타 등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위임 근거 법령 및 사무명 등 정비 내역 >

위임사무와 무관한 근거 법령 정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명 정비	기타 용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등록 사무의 근거 법령 정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 삭제,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삭제 • 건설기계 저장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사무 근거 법령 정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제6조제1호를 제5조로 변경,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 추가 • 건축사무소에 관한 사무 근거 법령 정비 →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등록 사무의 근거 법령 정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 신고 근거 법령 정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을 제51조제6항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무소에 관한 사무명 정비 → 「건축사법」 개정(법률 제10756호, '12. 5. 31. 시행)에 따라 '건축사업', '건축사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로 변경 •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명 지구 수정 → '등록의 갱정'을 '등록의 경정'으로 변경 •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명 지구 수정 → 건설기계 '검사증의 교부'를 '검사증의 발급'으로, 검사의 '최고'를 '명령'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오타 등 수정 →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운반법'을 '운반업'으로 변경 및 그 밖에 띄어쓰기 수정 • 약칭 수정 → '주·정차 단속'을 '주차 및 정차 단속'으로 변경 등

- 이는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할 것임.

5. 주관부서의 변경

-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의 주관부서(생활환경과)에 자원순환과를 추가함.
-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내용으로는 2024. 1. 1. 조직개편¹⁵⁾에 따라 종전의 ‘전략산업기반과’가 ‘산업입지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2024. 7. 1. 조직개편¹⁶⁾에 따라 변동된 다수의 사항을 반영함(아래 표 참조).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실, 공정경제담당관 → 공정경제과
- 농수산유통담당관 → 농수산유통과, 공동주택지원과 → 공동주택과
-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사무 주관부서 변경: 교통지도과 → 주차계획과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주관부서 변경
: 스마트건강과 → 건강관리과
-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사무(건설혁신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주관부서 변경
: 재난안전실 건설혁신과 →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 도로관리에 관한 사무(도로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 주관 부서 변경
: 도로관리과 → 보행환경개선과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사무 주관부서 변경
: 주택정책과 → 임대주택과

15) 서울특별시규칙 제46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4항.

16) 서울특별시규칙 제464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그리고 업무이관 등에 따른 주관부서의 추가·변경 내용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업무이관 등에 따른 주관부서의 추가·변경 내역 >

사무명	주 관 부 서	
	현 행	개 정 안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기후환경정책과 → 삭제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 추가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추가 (물순환안전국)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에 관한 사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 추가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용 ¹⁷⁾	창의행정담당관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자체점검¹⁸⁾을 통해 발굴한 개정사항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58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11호.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사무는 시정연구담당관(現 창의행정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직담당관의 분장사무에서 시정연구담당관(現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이관(2022. 1. 1.)되었으나 2023년 8월 개편('23. 8. 21.)에 따라 조직담당관으로 다시 환원됨.

1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실국별 자체점검 및 변경사항 제출 요청, 조직담당관-2655(2024. 3. 7.)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3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대중골프장 병설에 대한 사무 삭제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협의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길상은 (☎ 2133-674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실”로 한다.

별표의 민생노동국 표 주관부서란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하고,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하며, 민생노동국 표를 시민건강국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기획조정실 표 주관부서란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경제실 표 주관부서란 중 “전략산업기반과”를 “산업입지과”로 한다.

별표의 교통실 표 중 주차계획과란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2. 자치구 관할구역 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p> <p>3.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p>	<p>○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p> <p>○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p>	<p>구청장</p> <p>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p>
--	---	--	---------------------------------

별표의 교통실 표 중 교통지도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녹색에너지과란 다음으로 이동한다.

<p>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안전국)</p>	<p>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p>	<p>○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p>	<p>구청장</p>
--	-------------------------------------	---	------------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대기정책과란의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대기정책과란 다음에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란 및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p>	<p>1.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p> <p>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p>	<p>○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p>	<p>구청장</p>
--------------------------	--	---	------------

	<p>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p> <p>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p> <p>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p>		
<p>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p>	<p>1.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집·운반업, 재활용업에 한함)</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p> <p>라. 보고·검사 등</p> <p>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 「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7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9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3조</p> <p>○ 「폐기물관리법」 제68조</p>	<p>구청장</p>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자원순환과 제1호가목의 사무명란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자원순환과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생활환경과란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4.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p> <p>○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p>	<p>구청장</p>
--	--	---	------------

별표의 문화본부 표 중 문화예술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관광체육국 표 중 체육정책과란의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보건의료정책과 제1호가목의 사무명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사무명란 중 “병원”을 “종합병원·병원”으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보건의료정책과 제6호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스마트건강과”를 “건강관리과”로 한다.

별표의 행정국 표 다음에 건설기술정책관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기술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설혁신담당관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경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부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구청장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청장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발급 나. 검사의 명령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구청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별표의 재난안전실 표 중 건설혁신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재난안전실 표 주관부서란 중 “도로관리과”를 “보행환경개선과”로 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중 주택정책과란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주택정책과란 다음에 임대주택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주택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	-------------------------	---	-----

별표의 주택실 표 주관부서란 중 “공동주택지원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공동주택과란(중전의 공동주택지원과란)을 건축기획과란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중 건축기획과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p>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p> <p>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수리</p> <p>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처분에 따른 청문</p> <p>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p> <p>라. 보고 및 검사</p>	<p>○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27조</p> <p>○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p> <p>○ 「건축사법」 제29조</p> <p>○ 「건축사법」 제30조</p>	구청장
--	--	--	-----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 「건축사법」 제41조 ○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	-------------------------------------

별표의 정원도시국 표 중 자연생태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1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2항	구청장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여성가족정책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생략)	1. (생략)	○ (생략)	(생략)

여성가족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민생노동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공정 경제 경제 담당관	1. (생략)		구청장
농수산 유통 담당관	1. (생략)	○ (생략)	구청장

민생노동국(→시민건강국 다음으로 이동)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공정 경제 경제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수산 유통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창의 행정 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생략)	(생략)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조직 담당관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경제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전략 산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경제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산업 입지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통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차 계획과	(신설)	(신설)	(신설)

교통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차 계획과	2. 자치구 관할구역 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교통 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143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구청장 직속기관 의장 사업소 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3.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직속기관 의장 사업소 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기후 환경 정책과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대기 정책과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 시설과 물재생 계획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물순환 안전국) (→녹색 에너지과 이동)	1.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경우에 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 · 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 고 수리	○「소음·진동관리법」제 38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 시설과	1.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대상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시 입지 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 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 지후보에 대한 타 당성 조사의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 당지역 주민에의 공 개 및 공개에 필요 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 해 지방자치 단체 장과의 협의 및 중 양환경분쟁조정위원 회에 조정 신청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자원 순환과 생활 환경과	1.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업, 재활 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 금 처분 및 이에 따 르는 청문 다. 휴업·폐업 및 재개 업의 신고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라. 보고·검사 등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 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처리 금지 명령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생략) 구청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처리 금지 명령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생활 환경과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구청장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라. 보고·검사 등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 (생략)	○ (생략)	(생략)
	4. (생략)		
	가. (생략)	○ (생략)	
	나. (생략)	○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 제4호와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문화예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다. 등록 및 폐업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마. 영업의 승계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 정지 명령 등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아. 직권취소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차. 청문의 실시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체육 정책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략)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 (생략)	
	다. (생략)	○ (생략)	
	라. (생략)	○ (생략)	
	마. (생략)	○ (생략)	
	바. (생략)	○ (생략)	
	사. (생략)	○ (생략)	
	아. (생략)	○ (생략)	
	자. (생략)	○ (생략)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나. (현행 다목과 같음)	○ (현행 다목과 같음)	
	다. (현행 라목과 같음)	○ (현행 라목과 같음)	
	라. (현행 마목과 같음)	○ (현행 마목과 같음)	
	마. (현행 바목과 같음)	○ (현행 바목과 같음)	
	바. (현행 사목과 같음)	○ (현행 사목과 같음)	
	사. (현행 아목과 같음)	○ (현행 아목과 같음)	
	아. (현행 자목과 같음)	○ (현행 자목과 같음)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략)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	○ (생략)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	○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구청장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 재난안전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건설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		구청장

□ 재난안전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혁신과	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삭제)	(삭제)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삭제)	(삭제)		
	다. 등록의 갱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삭제)	(삭제)		
	라. 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삭제)	(삭제)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삭제)	(삭제)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삭제)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삭제)	(삭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삭제)	(삭제)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삭제)	(삭제)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삭제)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삭제)	(삭제)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삭제)	(삭제)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삭제)	(삭제)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나. 검사의 최고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구청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 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보행환경개선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주택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2. (생략) 3.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생략) ○ (생략)	구청장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주택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 제2호와 같음) ○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대주택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공동 주택 지원과	1. (생략)		(생략)
건축 기획과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 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 「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 「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 「건축사법」 제22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생략)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공동 주택과 (→건설 혁신과 다음으로 이동)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27조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 「건축사법」 제29조 ○ 「건축사법」 제30조 ○ 「건축사법」 제41조 ○ 「건축사법」 제22조의2 제1항	(현행과 같음)

□ 정원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 정원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 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 조제2항	구청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길상은(☎ 2133-6744)